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제출년월일 : 2022.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상 학교와 사업범위를 정비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부담을 경감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이 교육경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로 명시 (안 제1조)

나.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 (안 제2조제1호~제6호,제9호)

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안 제2조제7호)

라.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2조제8호)

마.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교육경비업무 주관 국의 국장(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부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관계법령 발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7. 29. ~ 2022. 8.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개인정보 사전검토: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을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을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현행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숙사 교육프로그램”을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 중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보조를”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교육경비업무 담당”을 “교육지원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문화업무 소관 부서장, 교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 대표 3명

다.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 규정함----------.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1. (현행3호와 같음)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현 행	개 정 안
6.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7. ----------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 프로그램 ----------
8. 기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 설>	9. 그 밖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보조를 위하여 평창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신 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문화업무 소관 부서장, 교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이

현 행	개 정 안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 대표 3명 다.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삭 제>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 대표 3명 3.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삭 제>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이 된다.	③ ----------교육지원업무 소관 팀장---.

관계법령

▢ 교육경비 보조의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교육경비 보조 대상학교

「강원도 교육청 협조요청 사항」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3(2022.1.3.))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유치원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서 유치원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치원이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1)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됨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지원에 협조
2) 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유치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협조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비의 증가가 예상
-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연락처	(033) 330 - 2020